

폭력예방 감수성 체크리스트

1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여성가족부
인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GENDER
EQUALITY

폭력예방 감수성 체크리스트



연번	체크리스트 문항	동의	비동의
1	가족 중 남편/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가정 생계를 부양하는 편이 맞다고 생각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육아로 인해 휴직을 하게 된다면 부부 중 여성이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상대방을 칭찬하고자 “몸매 좋다”, “날씬하다”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희롱이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직장에서 누군가가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면,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못 들은 척 하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성희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남성에게 여성 동료들과 거리를 두라고 말하는 것은 성차별로 볼 수 없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여성들은 상사나 동료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고, 직장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남성들보다 잘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사람들이 성 구매를 하는 건 인간의 본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성매매 처벌이 강화되어 성매매를 할 수 없게 되면, 성폭력 범죄가 증가할 것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옷이나 비싼 물건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돈을 준 것이 아니므로 성매매가 성립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성매매 피해자의 탈성매매는 온전히 개인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연번	체크리스트 문항	동의	비동의
11	지나치게 노출이 심한 옷차림 등,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는 성폭력의 책임(원인 제공)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	소리치거나 도망치는 등 적극적으로 성폭력에 저항하지 않았다면, 성폭력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	특정 신체 부위나 성(性)과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이 아니라면,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톡방 등에서 공유해도 문제될 것 없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4	탈의실이나 공중화장실에 초소형 불법 카메라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 의심하는 것은 예민한 반응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5	성폭력 사건 신고자를 허위신고자로 의심하는 것은 2차 피해가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6	남들 앞에서 자신의 배우자(또는 연인)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7	다른 부부나 커플 사이의 폭력을 목격해도 그것은 그들의 일이므로 말리거나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8	배우자나 파트너(연인)에게 감정이 격해져서 벽이나 탁자를 내리치는 정도는 폭력이라고 할 수 없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9	가족이나 애인, 친구 등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의 외모나 옷차림, 귀가시간, 대인 관계 등을 자신의 생각대로 따르게 하는 행동은 상대를 위한 애정/관심 표현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	스스로는 내키지 않더라도, 배우자나 연인이 원한다면 성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게 자연스럽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폭력예방 감수성 체크리스트 결과 해설



폭력예방 감수성 체크리스트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젠더기반폭력(Gender Based Violence) 상황을 각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폭력예방 감수성을 스스로 진단해 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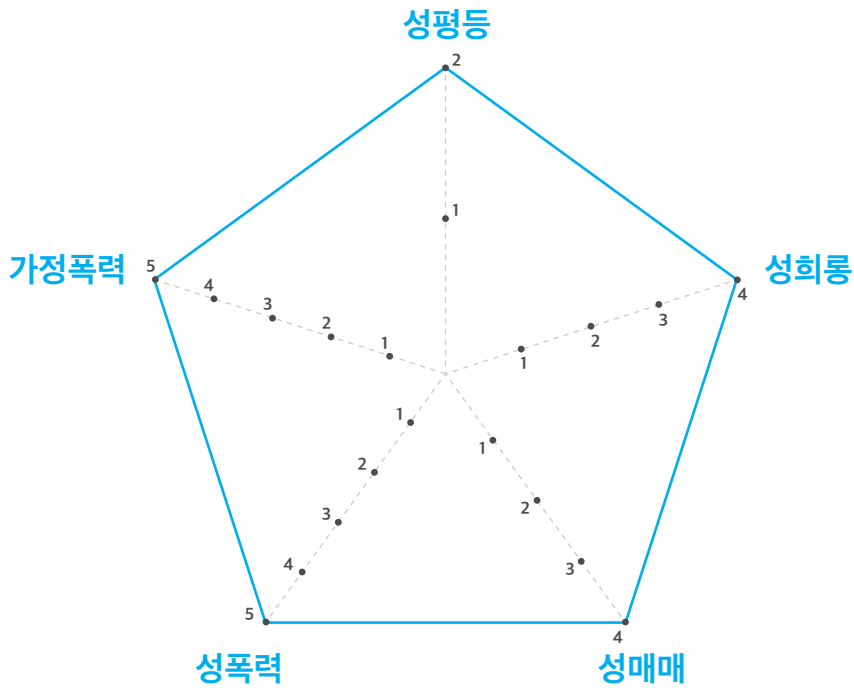
■ 전반적인 나의 폭력예방 감수성은? ('비동의' 개수)



우수 18개 이상	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폭력예방에 대한 판단력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의 태도를 잘 유지하면서, 주변 사람들도 젠더 기반폭력에 관심을 갖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바랍니다.
양호 15~17개	성평등이나 젠더기반폭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편입니다. 자신의 일상 속에 숨어 있는 폭력과 차별들을 잘 관찰하고, 그 해결을 위해 힘써 주기 바랍니다.
보통 11~14개	일반적인 수준의 성평등 인식과 폭력예방 감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례나 상황에서는 다른 판단을 내릴 여지도 있으므로, 꾸준한 관심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약간 부족 6~10개	성평등이나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한 편입니다. 때때로 성차별적인 행위나 폭력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찰과 교육을 통해 스스로의 교양과 의식을 높여 나가기 바랍니다.
많이 부족 5개 이하	성평등 의식과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학대행위도 한 사람의 인격과 인권을 해치는 명백한 폭력임을 잊지 말고, 다양한 교육을 찾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랍니다.

■ 영역별로 보는 나의 폭력예방 감수성

각 영역별 개수를 오각형 안 점선에 표시하고, 표시한 점들을 선으로 이어 어떤 모양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나의 폭력예방 감수성을 영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문항	비동의 응답	영역
1~2 번	<input type="text"/> 개	성평등 지수
3~6 번	<input type="text"/> 개	성희롱
7~10 번	<input type="text"/> 개	성매매
11~15 번	<input type="text"/> 개	성폭력
16~20 번	<input type="text"/> 개	가정폭력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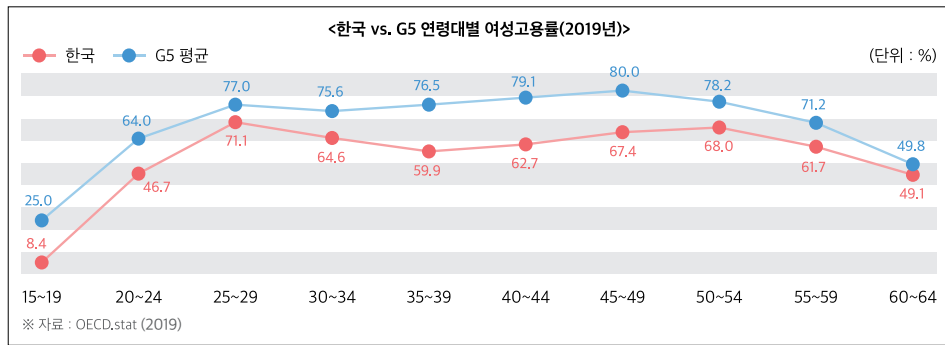
■ 문항 해설

1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성역할 고정관념, 가부장제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남성에게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별에 따른 고정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일하고, 함께 육아/가사에 참여하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2

OECD 여성 고용지표를 살펴보면 한국 여성들이 20대에 취업한 후 30대에 경력이 단절되는 M자형 곡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에 비해 여전히 도드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자녀 양육을 비롯한 돌봄 노동을 여성의 일로 여기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별을 떠나 돌봄을 누구나 전 생애주기에서 필요한 보편적 문제로 접근할 때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와 일터에서의 성 평등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M자형 곡선은 30세 이후 노동시장에서 퇴장했다가, 45세 이후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여성들이 많음을 나타냄

3

행위자의 의도는 성희롱 여부 판단과는 무관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칭찬이라 하더라도 성차별이 될 위험도 있고 상대방은 불쾌감, 평가를 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관심사, 문화생활, 취미생활, 스트레스 해소 방법 등 모두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를 찾아 대화를 나누는 연습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4

내 주변에서 성희롱 또는 성차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함께 웃고 즐거워하거나 침묵하는 행위는 가해자에게 동조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를 그 즉시 지적하거나 제지하기 어렵다면 발언의 의도를 발언자에게 정확히 되물어보거나(ex : 무슨 뜻인가요?), 화제를 전환하는 것도 즉각적 대응 방법 중 하나입니다.

5

권력형 성폭력 범치는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나요?
성희롱 예방을 명분으로 일터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행위는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질 수 있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인간존엄의 인권문제이자 보편적인 공동체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위직 등 관리자와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변화가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과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6

‘여성은’ 혹은 ‘남성은’이라는 말 뒤에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여성은’, ‘남성은’ 대신 ‘사람은’을 대입하였을 때 부자연스럽다면, 성차별적 편견일 수 있습니다. 성역할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차이와 다양성이 존중 받는 사회가 더욱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입니다.

7

성매매는 성욕과 같은 인간의 본능과 일대일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성매매는 성 상품화, 성산업 등 자본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매매 없는 평등한 세상을 위하여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 및 성매매에 내재한 폭력성, 범죄성, 반인권성에 대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성찰과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8

성매매의 합법/불법, 처벌 강화 여부 등은 성폭력 사건의 증가나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여러 해외 사례 및 연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성욕을 ‘참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통념입니다. 성적 욕망은 구매 행위를 통해 해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추구’하고 ‘충족’해야 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한 번 고민해 봅시다.

직접적인 금전이 아니더라도 숙식 제공 등 특정 이익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성행위가 있었다면 넓은 범위에서 성매매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10

성매매의 문제는 개인적 차원 뿐 아니라 사회적, 구조적 차원에서 함께 접근해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성매매 근절에 대한 국가와 우리 사회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11

성폭력이 실제로 노출이 많은 여름이나 늦은 밤에 특별히 더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통념은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12

사람마다 성격과 생활습관이 다르듯 성폭력 피해자들의 대응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피해 상황에서 저항하는 사람도 있지만, 위협이나 가해자의 지위 때문에 얼어붙기도 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3

일상적인 영상 혹은 사진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제3자에게 공유할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 합니다.

14

최근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 피해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초소형·위장형 카메라 등 불법 촬영 장비가 다양하고,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사회 구성원 전반적 인식전환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15

성폭력 처리 사건 중 피해자가 실제로 무고로 기소되는 비율은 매우 미미합니다. 오히려 성폭력 무고죄가 성폭력 가해자의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더 경계해야 합니다.

16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언어폭력을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거친 말이 때로는 용인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폭언, 무시, 모욕 등은 언어폭력에 해당됩니다.

17

연인이나 부부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은 폐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18

상대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 역시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하는 가정폭력 행위입니다.

19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해 마음대로 조종, 통제하고 감시하는 행위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20

부부나 연인 사이에도 성관계에 대한 거부는 명백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상대방은 그것을 왜곡 없이 받아들여 소통이 되는 상황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더 알아보기

성폭력이 위력 관계나 친밀한 관계에서 많이 발생한다고요?

동의를 것처럼 보여도 동의가 아니다!

→ 위력(위계)에 의한 성폭력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야 할 때가 많으므로, 피해자가 동의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피해를 당하고도 웃고 공부를 할 수 있다니, 피해자답지 않다고요?

성폭력피해자에게 적절한 행동과 태도란 없다!

→ ‘피해자라면 슬퍼하고, 부끄러워해야지’와 같은 고정관념이 오히려 2차 피해를 발생시키고,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을 어렵게 만듭니다.

단순히 성적인 영상을 소비하는 건 평범한 사람들의 사생활 아닌가요?

‘야한 동영상’이 아닌 ‘피해 촬영물’로 인식해야!

→ 비동의 또는 성착취에 의한 촬영물인지에 대한 구분 없이, ‘야동(야한 동영상)’이라 부르며 소비하는 문화가 디지털성범죄, 불법 촬영물 소비에 대한 경계심을 무디게 만듭니다.

심각한 물리적 폭력이 있어야 타인이 개입할 수 있다고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주변의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

→ 모욕·욕설과 같은 정서적 가해행위, 피해자의 물건 파괴, 주변인/반려동물을 위협하거나 해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가족과 친구로부터 고립시키기,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제적 학대행위 등 모두 피해자를 통제하고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폭력행위입니다.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주변의 개입과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 젠더기반폭력(Gender-Based Violence, GBV) 바로 알기

▶ 젠더기반폭력(Gender-Based Violence)

‘여성에 대한 폭력’이란, 공·사 영역 모두에서 발생하는 위협적인 행동이나 강압, 일방적인 자유의 박탈 등 여성에게 육체적, 성적, 심리적 고통과 해를 끼치는 젠더 기반의 모든 폭력을 말한다.

출처 : 유엔여성폭력철폐선언

▶ 젠더기반폭력(GBV)유형별 법적 정의

성희롱

현행 관련 법에서 말하는 성희롱의 정의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매매

관련 법에 따르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 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성폭력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 행위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데이트 폭력

‘데이트폭력’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헤어지자는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 후 스토킹으로 이어질 때도 많은데, 이 또한 명백한 데이트폭력입니다.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 별도의 법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해자에 대해 형법, 성폭력 처벌법, 경범죄처벌법, 기타 특별 형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성폭력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현재 범죄로 규정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 폭력 피해 신고 접수 및 지원 기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1366, 지역번호+1366)

-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상담 지원 및 긴급구조·보호 지원
- ▶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1개소씩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단, 서울·경기는 2개소)

해바라기 센터(전국 40개 센터)

- ▶ 위기 지원형 해바라기센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등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 통합적 지원
- ▶ 아동·청소년형 해바라기 센터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의학적 진단과 외상 치료, 심리 평가 및 치료, 사건면담, 법률지원서비스 등
- ▶ 통합형 해바라기 센터
데이트 폭력 등 신속한 대처를 위해 one-stop 의료, 상담, 법률, 수사 지원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 ▶ <http://www.mogef.go.kr/msv/wsrMain.do>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종사자)이 직장(기관)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인터넷을 통해 신고 가능
- ▶ 신고 내용은 업무 관련자 외에는 공개되지 않음
- ▶ 사건처리절차 관련 문의 02-735-7544 / 02-2100-6165,6162

가정폭력 상담소(전국 211개소)

- ▶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를 신고 접수 및 상담지원
- ▶ 가정폭력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법률 지원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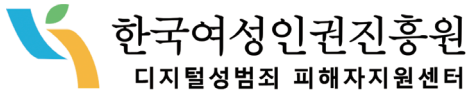
성폭력피해상담소(전국 168개소)

- ▶ 성폭력피해,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 ▶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성매매피해상담소(전국 30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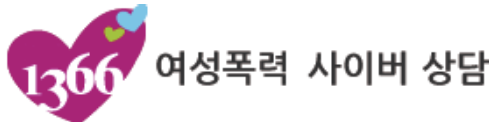
- ▶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현장상담, 법률·의료 지원, 관련시설 연계 등을 통해 인권유린 상황에 조기개입하고 피해자 보호와 탈성매매 지원
- ▶ 긴급구조, 현장방문 상담·의료 및 법률문제 지원 등 관련기관 연계

■ 디지털성범죄 신고 및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 <https://d4u.stop.or.kr/>
- ▶ 상담, 삭제, 수사지원 제공 및 법률·의료지원 연계
- ▶ 02-735-8994
- ▶ 365일, 24시간 온라인상담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 ▶ www.women1366.kr
- ▶ 전화상담(지역번호+1366)
- ▶ 365일, 24시간 상담
- ▶ 여성폭력사이버상담
- ▶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women1366'검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 www.kocsc.or.kr
- ▶ 디지털성범죄신고접수
- ▶ 신고전화 1377(24시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 ▶ <https://ecrm.cyber.go.kr/>
- ▶ 신고하기

폭력예방 감수성 체크리스트

수탁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발행처 여성가족부(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전화 02-2100-6000 / 02-3156-6100

디자인 소소한소통(www.sosocomm.com)